

현 안 업 무 보 고

2022. 9.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I. 일 반 현 황

1 기관현황

- ☐ **기 관 명**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타워 5, 12층
- ☐ **설 립 일** : 2019. 2. 28.
- ☐ **설립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설립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 **설립목적** :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하여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며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 **사업의 범위**(조례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 등”이라 한다)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이사회 현황

□ 임 원 : 이사 9명, 감사 2명

(’22.8.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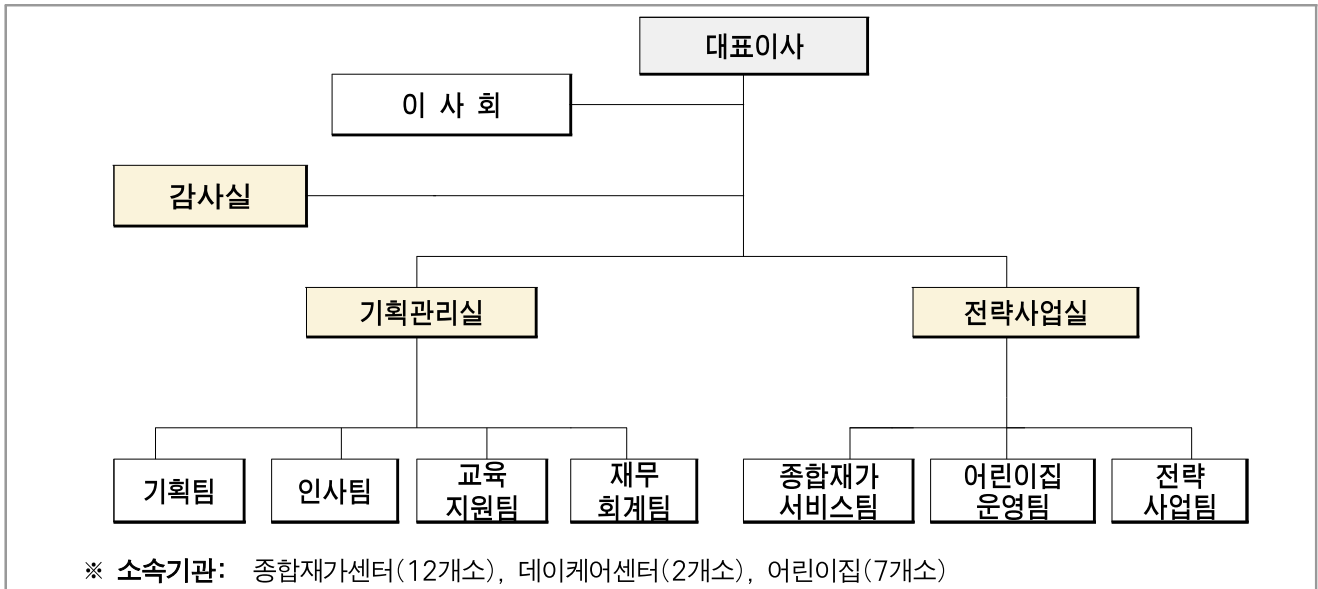
직 책	성 명	주 요 경 력	임 기
상임이사 (대표이사)	황 정 일	· 前)서울시 시민소통특보실 특보	’21.10.28. ~ ’24.10.27.
비상임이사 (선임직)	김 학 문	· 現)설악양지노인요양원 원장 · 前)서울시 보건복지국 서기관	’22.3.1. ~ ’25.2.28.
	박 병 환	· 現)평화복지재단 사무총장 · 前)홍파복지원 원장	’22.3.1. ~ ’25.2.28.
	양 숙 미	· 現)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前)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장	’22.3.1. ~ ’25.2.28.
	정 순 구	· 前)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 강사 · 前)서울시청 / 5급~1급	’22.3.1. ~ ’25.2.28.
	이 경 자	· 現)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송파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20.5.11. ~ ’23.5.10.
	정 희 영	· 現)충실사이버대학교 스포츠재활복지학과 교수 · 前)동원대학교 보건운동관리학과 겸임조교수	’22.3.1. ~ ’25.2.28.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 수 연	· 現)서울시 복지기획관	’22.8.19. ~ 발령시
	곽 종 빈	· 現)서울시 재정기획관	’21.7.19. ~ 발령시
비상임감사 (선임직)	최 복 렬	· 現)분당경찰서 시민청문관 · 前)서울시 감사관	’21.10.28. ~ ’23.10.27.
비상임감사 (당연직)	하 영 태	· 現)서울시 복지정책과장	’21.7.19. ~ 발령시

3

조직 및 인력

□ 조 직 : 3실 7팀

(’22.8.31. 기준)



□ 인 력 : 정원 572명 / 현원 461명

〈’22.8.31. 기준 / 단위: 명〉

구분	계	대표이사	일반행정						서비스지원				전문서비스			보육			기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3급	4급	5급	6급	나급	다급 (요양)	다급 (활동)	4급	5급	6급	다급
정원	572	1	-	2	1	10	20	10	1	14	45	17	14	266	55	8	1	95	12
현원	461	1	-	2	-	5	17	15	-	13	35	15	14	202	47	7	1	83	4

※ 제외: 파견직 공무원 1명(사회복지 5급 1명), 계약직 49명(촉탁계약직 18명, 계약직가급 4명, 계약직나급 26명, 기능계약직 1명)

※ 포함: 노조지부장 1명 전문서비스 다급에 포함

○ 제외 인원 세부현황

- 파견직(1): 감사실장
- 촉탁계약직(18): 전문서비스직 정년퇴직 후 재임사
- 계약직가급(4): 본부 일반행정 및 소속기관 서비스지원직 업무 수행
- 계약직나급(26): 보육직 업무 수행
- 기능계약직(1): 운전원

□ 부서별 주요업무(본부)

부 서 명		주 요 업 무
감사실		○ 감사 기본계획 및 소속기관 감사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종합, 특정, 일상감사 및 대표이사 지시에 의한 감사 등 수행에 관한 사항 ○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 공직기강 확립,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기획 관리실	기획팀	○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계획, 경영방침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사업계획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예·결산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시 유관부서, 의회 등)에 관한 사항 ○ 조례, 정관 및 사규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 법무지원에 관한 사항 ○ 경영평가, 기관장·내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감염병 대응지침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팀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채용·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역량평가 및 근무평가제도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복리후생제도 수립 및 운영,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노동단체 협의 및 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교육 지원팀	○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민간기관지원 사업 총괄 및 민간교육 지원, 공공자원 개방에 관한 사항 ○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언론대응 및 뉴미디어 채널 운영 등 업무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정보화 전략수립, 시스템 구축 및 전산설비 도입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재무 회계팀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관리, 자금관리, 회계결산 및 감사대응, 세무업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각종 수입금 및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 ○ 구매계약 및 계약관리,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전략 사업실	종합재가 서비스팀	○ 종합재가센터 등 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신규시설 수탁계획 수립 및 인가에 관한 사항 ○ 민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돌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팀	○ 어린이집운영팀 사업계획 및 소속기관 예산편성·집행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공모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운영현황 조사·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보육 표준운영모델 적용 및 운영, 소속기관 행정·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보육 장학연구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략 사업팀	○ 요양시설 수탁 및 운영지원, 운영모델 연구에 관한 사항 ○ 서비스 품질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 민간지원사업 시설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감정노동보호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신규사업 개발 및 준비 및 사업별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 2022년 예산

○ 예산총괄

(단위:천원)

구분	총 예산	인건비*	운영비	정책사업비	예비비
계	35,433,436	4,010,463	2,749,129	24,018,971	4,654,873

※ 인건비 : 본부 인건비 (소속기관 인건비는 정책사업비에 포함)

※ 총예산 중 인건비는 20,478백만원으로 57.8% 비중 차지

○ 세입예산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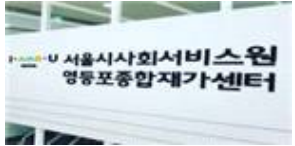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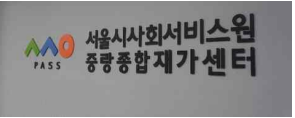
과 목	2022년	2021년	증 감
계	35,433,436	32,769,426	2,664,010
1. 영업수입(자체)	6,452,469	5,548,891	903,578
2. 출연금수입	18,879,619	16,018,906	2,860,713
3. 보조금수입	3,298,654	3,030,887	267,767
4. 이자 및 기타수입	309,969	101,400	208,569
5. 잉여금	6,492,725	8,069,342	△1,576,617

○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목	2022년	2021년	증 감
계	35,433,436	32,769,426	2,664,010
1. 본부 인건비	2,746,863	2,297,689	449,174
2. 본부 운영비	2,749,129	2,861,594	△112,465
3. 정책사업비	24,018,971	23,148,548	870,423
○ 종합재가센터 운영	15,248,833	15,224,437	24,396
○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1,599,589	1,454,212	145,377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5,799,058	5,072,089	726,969
○ 민간서비스기관 지원	180,972	168,800	12,172
○ 서비스 품질관리	307,058	185,510	121,548
○ 돌봄체계 강화 지원기반 구축	351,961	512,000	△160,039
○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531,500	531,500	0
4. 성과급	1,263,600	988,000	275,600
5. 예비비	4,654,873	3,473,595	1,181,278

시설명		시설현황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본부)		- 설치일 : 2019. 3. 11.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89 포스트타워 12층 - 면 적 : 12층-613㎡ (전용면적), 5층-454㎡ (전용면적) - 주요시설 : 사무공간, 교육실, 회의실 등	
종합 재가 센터 (12)	성동	- 개 소 일 : 2019. 7. 23. - 소 재 지 : 성동구 아차산로33 삼일빌딩 2층 - 면 적 : 353㎡ (사무실, 교육장, 휴게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간호, 돌봄SOS	
	은평	- 개 소 일 : 2019. 8. 28. - 소 재 지 : 은평구 진흥로77, 와이쓰리빌딩 3층 - 면 적 : 242㎡ (사무실, 교육장, 휴게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강서	- 개 소 일 : 2019. 9. 18. - 소 재 지 : 강서구 공항대로 325, 에이스빌딩 3층 - 면 적 : 466㎡ (사무실, 교육장, 휴게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노원	- 개 소 일 : 2019. 10. 23. - 소 재 지 : 노원구 한글비석로432 기탄빌딩 3층 - 면 적 : 275㎡ (사무실, 교육장, 휴게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마포	- 개 소 일 : 2020. 1. 17. - 소 재 지 : 마포구 마포대로 11길 44-81(이현문화건강센터) 2층 - 면 적 : 지상 206㎡ (사무실, 교육장, 휴게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송파	- 개 소 일 : 2020. 9. 28. - 소 재 지 : 송파구 위례성대로 18(방이동), 금복빌딩 1305호 - 면 적 : 243㎡ (사무실, 교육장, 휴게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시설명		시설현황
	영등포	- 개 소 일 : 2020. 9. 28. - 소 재 지 : 영등포구 선유로 130(양평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3 203호, 204호 - 면 적 : 192㎡ (사무실, 교육장, 휴게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양천	- 개 소 일 : 2020. 9. 28. - 소 재 지 : 양천구 목동로 177(신정동), 정동빌딩 8층 - 면 적 : 263㎡ (사무실, 교육장, 휴게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도봉	- 개 소 일 : 2020. 11. 18. - 소 재 지 : 도봉구 도봉로136길7(창동), 202호 - 면 적 : 262㎡ (사무실, 교육장, 휴게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중랑	- 개 소 일 : 2020. 11. 30. - 소 재 지 : 중랑구 중랑역로 62(중화동), 3층 - 면 적 : 266㎡ (사무실, 교육장, 휴게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강동	- 개 소 일 : 2020. 12. 14. - 소 재 지 : 강동구 양재대로 1410(둔촌동), 6층 - 면 적 : 258㎡ (사무실, 교육장, 휴게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서대문	- 개 소 일 : 2020. 12. 14. - 소 재 지 : 서대문구 연희로 142(연희동), 2층 - 면 적 : 231㎡ (사무실, 교육장, 휴게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 
데이 케어 센터 (2)	초록숲	- 개 소 일 : 2020. 9. 9. - 소 재 지 : 마포구 마포대로 11길44-81(아현문화건강센터) 지하1층 - 면 적 : 366㎡ - 주요사업 : 주야간보호서비스 
	강서 든든	- 개 소 일 : 2020. 11. 2. - 소 재 지 :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공항동), 통합복지센터 2~3층 - 면 적 : 242㎡ (생활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조리실, 샤워실 등) - 주요사업 :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명		시설현황
국공립 어린이 집 (7)	노원 든든	- 개원일 : 2020. 3. 1. - 소재지 : 노원구 초안산로2리길 월계센트럴아파트 단지 내 - 면적 : 227.5㎡ (원장실,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유희실 등) - 주요사업 : 보육정원 45명 (아간연장 장애통합 보육) 
	서대문 든든	- 개원일 : 2020. 5. 1. - 소재지 : 서대문구 거북골로100 래미안루센티아 단지 내 - 면적 : 378.96㎡ (원장실, 교사실, 보육실, 조리실, 유희실 등) - 주요사업 : 보육정원 71명 (아간연장 시간제 보육) 
	새우개 하나	- 개원일 : 2020. 7. 1. - 소재지 : 중랑구 용마산로 139 다길17 - 면적 : 591.28㎡ (원장실, 교사실, 보육실, 조리실, 옥상놀이터 등) - 주요사업 : 보육정원 68명 (아간연장 장애통합 보육) 
	응암 행복	- 개원일 : 2020. 7. 1. - 소재지 : 은평구 은평로220 녹번이편한세상캐슬 단지 내 - 면적 : 774.85㎡ (원장실, 교사실, 보육실, 조리실, 유희실 등) - 주요사업 : 보육정원 98명 (아간연장 장애통합 보육) 
	영등포 든든	- 개원일 : 2020. 9. 1. - 소재지 : 영등포구 대림로35 가길 9 - 면적 : 489.88㎡ (원장실, 교사실, 보육실, 조리실, 유희실 등) - 주요사업 : 보육정원 65명 (아간연장 다문화 보육) 
	강동 든든	- 개원일 : 2020. 9. 21. - 소재지 : 강동구 아라수로93가길 110 리버스트4단지 내 - 면적 : 545㎡ (원장실, 교사실, 보육실, 조리실, 유희실 등) - 주요사업 : 보육정원 95명 (아간연장 장애통합 보육) 
	송파 든든	- 개원일 : 2021. 3. 1. - 소재지 : 송파구 위례서이로25 위례포레샤인 13단지 내 - 면적 : 407㎡ (원장실, 교사실, 보육실, 조리실, 유희실 등) - 주요사업 : 보육정원 77명 (아간연장 장애통합 보육) 

II. 운영 방향

1 비전과 전략

VISION 2022~2024

미션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통한
서울형 사회서비스 선도

비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공적 돌봄 선도 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경영방침

돌봄24실현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생태계 강화

책임경영 구현

핵심가치

전문역량

고객감동

동반성장

투명경영

슬로건

언제든, 어디서든, 믿음직한 동반자

경영목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아이중심·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사회서비스 생태계
지원체계 강화

안전경영 및
책임경영 구축

전략목표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서비스 향상

서울형 공보육
지원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품질고도화 및
서울복지플랫폼 강화

사회적 책임강화 및
지속경영 혁신

전략과제

- ▶(가)모두돌봄센터 운영
- ▶적극개입(민간곤란) 사례 비중 및 긴급돌봄 대상 확대
- ▶24시간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 ▶서울특화 공보육 운영모델 구축
- ▶취약계층 공보육 내실화
- ▶식품위생 안심 Zone 및 영유아 건강점검 시스템 구축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강화
-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환경 구축 및 민간기관 역량 강화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권과 권리보호

- ▶사회적가치(인권·안전·윤리경영 등) 확산을 통한 공공성 확립
-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
- ▶성과중심 조직역량 및 경영효율 관리 역량 강화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로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

구분	분야	지 표 명	단위	2021 (실적)	2022	2023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합재가 센터운영	종합재가센터 운영	개소	12	12	12
		종합재가 이용자 만족도	점	89.7	91.2	91.4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개소	2	2	2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이용	명	1,657	1,700	1,870
		돌봄 SOS 서비스 제공 (총 서비스 제공 건수 중 돌봄SOS 비율)	비율(%)	25.6	35	45
	긴급돌봄	긴급돌봄서비스	명	77	80	80
아이중심 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국 공 립 어린이집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소	7	7	7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점	89.0	90.0	90.2
지원체계 강화 및 안전경영 구축	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건	59	80	85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건	3	7	7
		공공자원 개방 공유	건	4	20	30
		민간기관 교육지원	건	37	24	30
		민간기관 상담 및 컨설팅	건	2	20	25

Ⅲ. 2022년 주요 추진방향

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종합재가센터 역할 재정비를 통한 (가)모두돌봄센터로 기능 재정립
- 긴급돌봄지원단 상시체계 구축 및 돌봄대상 확대
- 민간곤란 사례(중증 장애 등) 적극 개입(지원강화)
- 돌봄 SOS 확대 운영을 통한 돌봄의 연속성 및 공공전달체계 확립

② 아이중심·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 취약보육 우선실시 및 서울시 보육정책 시범사업 참여 확대
- 발달모니터링 지원사업을 통한 취약보육 영유아 개별화 지원
- 급·간식 특화사업 확대·적용을 통한 안심 보육환경 구축
- 문화예술교육 협력사업 추진으로 영유아 놀 권리 강화

③ 사회서비스 생태계 지원체계 강화

- 서비스 품질 체계 강화를 위해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수행
- 감정노동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녹음장비 보급
- 민간지원사업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④ 안전경영 및 책임경영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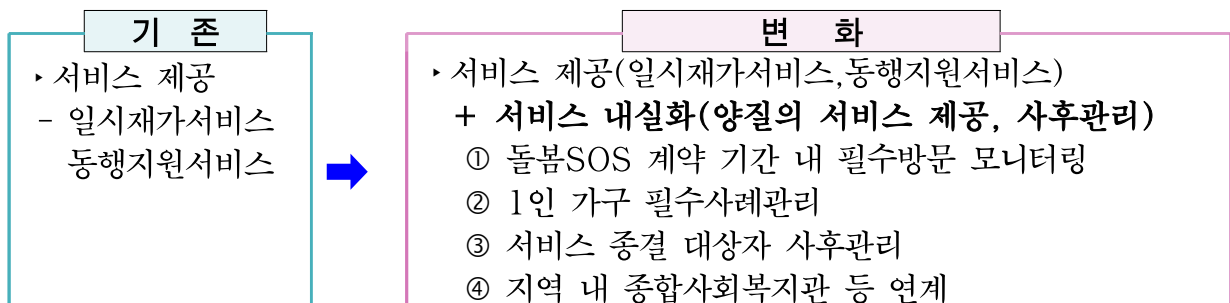
- 숲체험 힐링 프로그램 제공 등 근로자 감정노동 보호 관리
- 근로자 작업 및 신체 특성(고객응대, 근골격계 질환), 이용자 특성(영유아, 장애인)을 고려한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 수립·진행

IV. 주요사업 추진 계획

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종합재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운영

- 종합재가센터 명칭 변경을 통해 기능 재정립 추진
 - (가칭) ○○구 모두돌봄센터 명칭 변경 추진
- 지역사회 공공돌봄 지원체계 구축 추진(12개 자치구별 정책간담회)
 - 지역사회 긴급돌봄 의뢰·지원의 ONE-STOP 체계 구축
- 돌봄 SOS 서비스 제공 비율 확대 운영
 - '22년 최대 35%까지 확대 및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일시재가 및 동행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지원사업

- 코로나 19 외 긴급돌봄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상시 긴급돌봄지원 체계 구축
 - 학대피해자(아동·노인) 병원 내 긴급돌봄지원
 - 전담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학대피해아동 또는 위기 청소년 대상
 - 야간·주말·공휴일 또는 응급상황시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ONE-STOP 의료 지원
- 코로나 19 외 긴급돌봄사업(돌봄SOS+)추진
 - 돌봄SOS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까지 일시재가서비스 확대 추진
-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 등 적극 검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수요자 맞춤형 취약보육 우선 실시 및 운영 내실화
 -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취약보육 운영 및 영유아 발달모니터링 신규사업 추진
- 서울시 보육정책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의 책무성 이행
 - 서울시 보육정책 사업 참여를 통한 선도적 공보육 모델 기반 마련
- 대표이사 핵심 추진사업 추진(돌봄24)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 조리실 식품위생 안심ZONE, 영유아 안과검진, 종이서류 없는 어린이집 운영

☐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 급·간식 차별화를 통한 영유아의 발달 도모 및 안심 보육환경 구축
 - 모니터링, 위생점검 강화 및 특화식단 제공 등을 통한 급·간식 품질관리
- 보육과정 장학을 통한 보육교직원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
 - 보육교직원 대상 보육과정 장학 및 영유아 상호작용 컨설팅 지원
- 본부-소속기관 품질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질적수준 제고
 - 운영현황 모니터링, 어린이집 평가제 사전·사후 컨설팅 실시

☐ 보육분야 소통·협력 강화

-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놀 권리 보장
 - 서울문화재단 업무협력(MOU) 유아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이용자(양육자)·보육교직원 간담회 추진을 통한 소통강화
 - 이용자(양육자) 열린 간담회, 보육교직원 해우소 간담회 운영
- 대·내외 보육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 보육분과위원회, 부모 운영위원회, 보육분야 외부자문 실시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강화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사업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질 제고 강화
 - 이용자·보호자·직원 대상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해 이용자 친화적 품질관리 실현

☐ 민간지원사업

- 민간지원사업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경영컨설팅, 시설안전점검, 교육지원, 공공자원시스템의 기존 체계 홈페이지 전산 연계화로 활성화
 -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 사업 방향성 제고
- 민간기관에 적극적 사업 홍보를 통해 수요자 발굴 및 이용률 제고
 - 온·오프라인을 통한 민간 사회복지시설 대상 홍보
 - 돌봄인력 실습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사업 홍보
 -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항목’ 교육 확대 실시

☐ 종사자 역량강화

- 공직 가치관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확대
 - 기관에 맞는 청렴교육 자료를 활용한 일상적 교육을 통해 공직 마음가짐 강화
-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수요 반영 직무교육 운영
 - 종합재가센터 4가지 주제(낙상, 치매, 재활운영, 휠체어)
 - 보육(놀이, 학습공동체 등), 행정직(문서작성, 기획력 등)

☐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한 실질적인 안전보건 체계 운영
 - 안전보건 체계 고도화를 통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선도 역할
- 근로자의 이용자 특성에 알맞은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 진행
 - 근로자 작업 및 신체 특성(고객응대, 근골격계 질환), 이용자 취약 특성(영유아, 장애인)을 고려한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 수립 진행

V. 주요현안 보고

① 종합재가센터 명칭변경 및 기능재정립

② 긴급돌봄지원사업

③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협력사업

1

종합재가센터 명칭변경 및 기능재정립

‘재가’ 중심 서비스에서 ‘전체 돌봄’ 영역으로의 전환 · 확대

- 주요내용: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기능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역할을 반영한 **종합재가센터의 신규명칭 (가칭 모두돌봄센터) 적용 및 기능재정립 추진**

□ 종합재가센터 명칭변경 및 기능재정립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2.3.25)
 - ‘재가서비스 중심’ 에서 ‘전체 돌봄서비스’로 확대
 -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적책임 강화에 필요한 사업 우선 추진
- 긴급돌봄지원 상시 운영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24’ 추진에 따른 공공성 강화

□ 종합재가센터 명칭변경 추진경과

- 공모제안 개최('22.4~5월)
 - 내부 직원 참여로 123건 응모 접수
 - 외부 브랜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모심사를 통해 신규명칭(안) 선정

〈최우수 1개작, 우수 5개작 선정〉

- (최우수) 모두돌봄센터
- (우 수) 서울안심돌봄기관, 종합돌봄지원센터, 든든24케어센터, 돌봄센터, 돌봄지원센터

- '22.4~5월 관련 회의 6회 추진(기능재정립 안전 포함)
 - 내부TF회의(2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1회), 노인분과 · 장애인분과위원회(3회)
- **신규명칭 최우수작: 모두돌봄센터**
 - (의미) 긴급하고 필수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 모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 돌봄센터의 구현

적용예시

성동**종합재가센터**



성동구 **모두돌봄센터**

작성 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 6925-3697 종합재가서비스팀장: 박정호 ☎ 2038-8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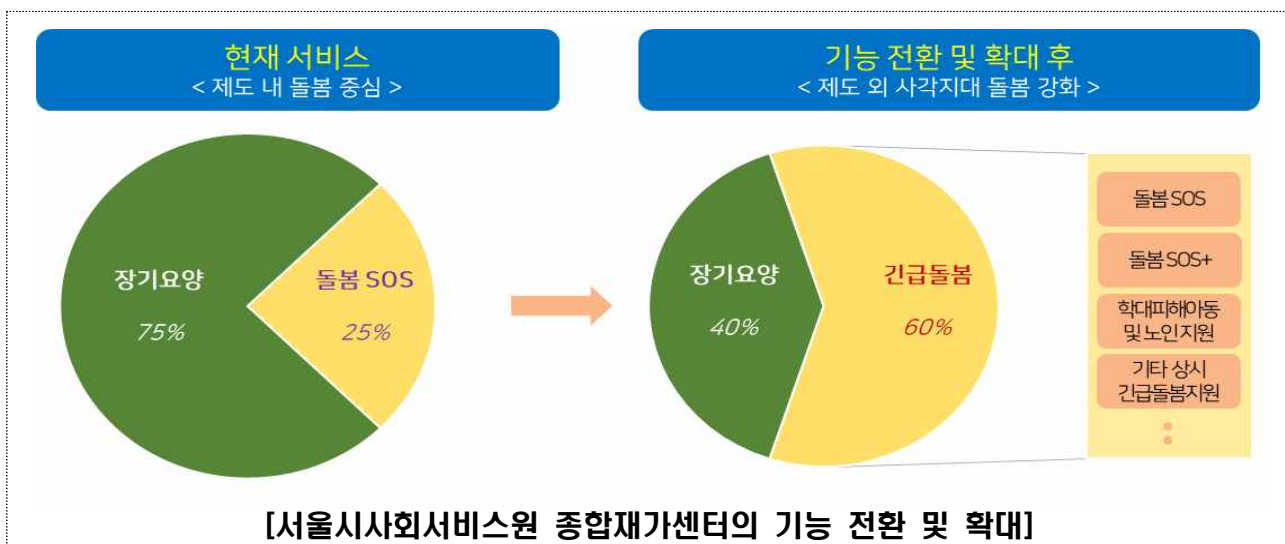
담당: 황보승 ☎ 8725

□ 종합재가센터 기능재정립 주요내용

○ 종합재가센터의 기능에 관한 요구사항

- (법적/제도적) 모든 대상에게 긴급한 돌봄지원, 사회서비스의 확대
- (지역사회)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협력강화
- (이용자) 기존 돌봄의 공백을 위한 즉각적 서비스 지원

○ 【돌봄의 공공성 강화】 ‘긴급돌봄 · 틈새돌봄’ 강화로 기능 전환



○ 지역사회 중심의 공적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강화

- 종합재가센터 소재 12개 자치구별 정책간담회 추진
 - ▶ 지역사회 ‘제도 외 사각지대 돌봄강화’를 위한 ONE-STOP 체계 구축(MOU체결)
 -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한 자치구 돌봄체계 내 종합재가센터의 공식적 역할 강화

○ 지원 확대에 따른 인력의 서비스 제공역량 다양화(교육 및 자격 다양화)

□ 향후 계획

○ 종합재가센터 명칭변경 시점일: 2022.10.1.

- '22.7월 서울시 협의 완료: 제311회 주요업무보고 시 관련사항 포함
- '22.8월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 '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안) 종합재가센터 명칭변경 포함

코로나19 등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지원하여 공공의 책임성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3월 ~ 긴급돌봄 상황 종료 시
- 지원대상: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인해 즉시 돌봄이 필요한 대상
- 지원내용

구분	대상	감염병 정도	제공형태	서비스내용
유형1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노인 및 장애인	해당없음	재가방문	재가서비스, 외부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유형1-1	코로나19 외 즉시 돌봄이 필요한 대상		재가방문 또는 해당시설	재가서비스, 동행서비스 등
유형2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설 입소자	비확진자 (밀접 접촉자)	격리시설 동반입소	재가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유형2-1	코호트 격리시설 이용자 중 격리시설 입소자			
유형3	코호트 격리시설 대체인력 지원		코호트시설 또는 전담병원 동반입소	해당 시설 및 병원의 돌봄 업무 지원
유형4	병원 내 돌봄이 필요한 확진된 중증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원 동반입소	해당 병원 내 돌봄업무 지원

※ 복지부 '2022년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침' 적용, 현재 유형2~4는 미지원

□ 추진실적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21,798.5시간, 이용자 121명
- 돌봄지원인력: 326명

- 전체실적

(기준: '20.3월 ~'22.8.31.)

구분	계		유형 1		유형 1-1		유형 2		유형 2-1		유형 4	
	이용자수	지원인력	이용자수	지원인력	이용자수	지원인력	이용자수	지원인력	이용자수	지원인력	이용자수	지원인력
서비스제공시간	21,798.5		1,015.5		612.0		6849.5		13,081.5		240	
서비스계약(일)	1,184		142		108		320		603		11	
인원(명)	121	326	21	15 22(단기)	8	1 10(단기)	35	41 64(단기)	56	85 84(단기)	1	4(단기)

※ 유형4 서비스 제공 1건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중 확진된 사례

작성 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 6925-3697 종합재가서비스팀장: 박정호 ☎ 2038-8698

담당: 황보승 ☎ 8725

강민주 ☎ 8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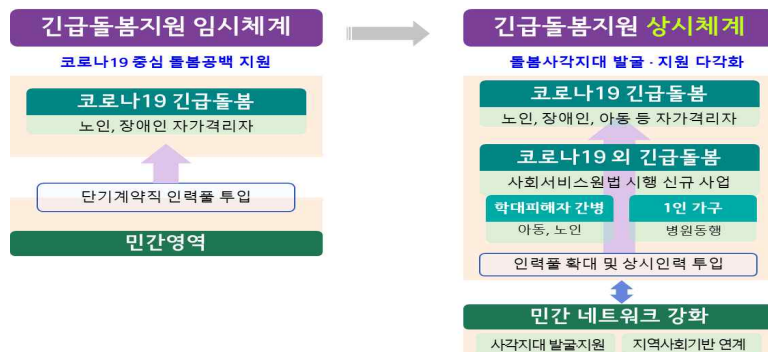
- 연도별실적

기간	서비스시간 (시간)	계약일 (일)	투입인력 (명)	이용자(명)			
				합계	노인	장애인	아동
'20년(3~12월)	2,089	109	35	12	8	4	-
'21년(1~12월)	17,337	834	234	77	66	11	-
'22년(1~8월)	2,372.5	241	57	32	11	17	4
합계	21,798.5	1,184	326	121	85	32	4

- 긴급돌봄 단기계약직 6차례 채용 및 감염병 예방 기본교육(13~16시간) 진행
※ '21년 1~5차채용 총 102명(요양 74명, 활동 28명) / '22년 6차 채용 총 14명(요양13명, 활동 1명)
-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상시 긴급돌봄지원 체계' 구축
 - 전담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학대피해자(아동·노인) 병원 내 긴급돌봄지원
: 야간·주말·공휴일 또는 응급상황시 신속한 ONE-STOP 지원
 -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사업(돌봄SOS+) 추진
: '22.6월부터 돌봄SOS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까지 일시재가서비스 확대 추진

□ 향후계획

- 임시 긴급돌봄지원 체계 → 상시 긴급돌봄체계 구축 및 대상 확대 : 연중
 - 「사회서비스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긴급돌봄지원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
 -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제10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적극 추진
※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 등 적극 추진(검토)
- 상시 긴급돌봄체계 구축 및 대상 확대 운영 : 연중



서울문화재단과 연계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 및 놀 권리 보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8월~12월
- 사업대상: 소속기관 5개소 유아 98명
- 사업내용: 서울문화재단 협력 사업추진을 통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진행

☐ 추진실적

- 서울문화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22. 6. 14.(화)
 - 소속 국공립어린이집 유아 및 보육교직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 권리 보장
- 소속기관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사항 확정
 - 소속기관 5개소 만 3~5세 유아 98명 참여 예정

〈문화예술교육 활동 세부내용〉

어린이집	문화시설명	단체명	활동명	활동내용
응암행복	종로 아이들극장	사다리 연극놀이 연구소	놀이로 여는 예술세상	공연예술 주요 요소를 연극놀이 체험활동
강동든든	광진문화원	한국아동국악 교육협회	용궁놀이	수궁가 기반 예술 표현 및 창작활동
새우개하나 노원든든	중랑구립 정보도서관	광대생각	물방울의 여행	전통연희 주요 소재를 활용한 공간에서 물방울로 태어나 동화 속 세상 체험활동
영등포든든	은행나무 작은도서관	드라마 실험실 풀	계절과 소리	계절을 소재로 하는 연극/음악 중심 통합예술 교육 활동

☐ 향후계획

- 유아 문화예술교육 추진 및 사업 모니터링 : '22. 8월~11월
- 협력사업 결과 보고 및 환류 : '22. 12월

Ⅵ. 보 고 안 건

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개정안 보고

□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원 자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원 자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2.3.25.시행) 시행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구 수정

- ‘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 ‘이사장’을 ‘원장’으로 변경

○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 변경 및 삭제

- 제7조(임원의 선임) 7항 삭제
- 제24조(재산의 관리) 2항의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시장의 허가’로 변경, 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7조(임원의 선임) 6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
- 제12조(임원 선임 제한) 삭제
- 제31조(조직 및 정원) 2항 삭제 등

○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조문 내용 변경

-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제4조(사업의 범위) 1~6호 수정
- 제9조(임원의 임기) 1,4,5항 등

○ 조문 제목 수정 및 신설

- 제5장의 ‘재산과 회계’를 ‘재산 및 회계’로 변경
- 제19조 ‘이사회 참여 제한’을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로 변경
-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신설
-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리’ 신설

○ 조직도 수정

- ‘이사장’ 삭제

☐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2.3.25.시행)
-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2.3.25.시행)

○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서울특별시장 승인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이사회 의결	→	서울특별시장 허가
일정	’22.8월 중순		9월 중순~말		10월		10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2.3.25.시행)
제13조(정관)②시·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첨부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한다. ②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립한다. ②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소재지) 사회서비스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현행	개정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2.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나. 사회복지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4. 사회복지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5. 사회복지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6. 사회복지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제4조(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서비스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개정
제5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각 사업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u>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u>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재단의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수익사업) ① <u>사회서비스원은 제4조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u>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u>사회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u> 수익사업을 하려면 각 사업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u>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u>사회서비스원의 목적사업에</u> 사용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u>이사 10명(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한다)</u> 〈개정 2020. 10. 7.〉 4. 감사 2명 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다른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u>비상근</u>으로 한다. ④ 상근임원의 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u>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u> 1. <u>원장 1명</u> 2. <u>원장,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u> 3. 감사 2명 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다른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u>비상임</u>으로 한다. ④ (삭제)

현행	개정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생략) ③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신설 2020. 10. 7.> ⑤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⑥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7. 30.> ⑦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u>원장을 포함한</u> 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u>법 제14조에 따른</u>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u>사회서비스원의</u>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노동이사는 입·후보 등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최종 노동이사 후보자를 선출하고, 투표결과를 반영하여 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⑤ 감사 2명중 1명은 시 사회서비스원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공모 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⑥ 이사, 원장 및 감사는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 후 시장이 임명한다. ⑦ <삭제>

현행	개정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생략)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제 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생략) 8.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⑥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원을 7명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3.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추천 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심의의결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8. 사회서비스원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⑥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사회서비스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
(신설)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둔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으로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기 전 2개월 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현행	개정
제9조(임원의 임기) ① <u>선임직 이사(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u> ② (생략) ③ <u>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조례와 재단의 규정에서 정하는 노동자투표 등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u> ④ <u>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u> ⑤ <u>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u> ⑥ (생략)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u>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u>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조례와 사회서비스원의 규정에서 정하는 노동자투표 등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u> ④ <u>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 ⑤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u> 1. <u>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u> 2. <u>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u>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u>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3.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원에서 해임된 사람 4.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5. 재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u>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임원의 해임) 시장은 임원이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5. 〈삭제〉
제12조(임원 선임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삭제)

현행	개정
제13조(임원의 직무 등) ① <u>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② <u>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집행과 재정을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 ③ <u>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u> ④ <u>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이사회에 참석한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u> ⑤ <u>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u> ⑥ <u>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u> 1. <u>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u> 2. <u>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u> 3. <u>이사회 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u> 4. <u>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u> 5. <u>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와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는 일</u> 6. <u>제5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u> 7. <u>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조례와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u>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u>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대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u> 1. <u>이사회 소집 및 진행</u> 2. <u>사회서비스원의 업무집행과 재정 총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u> 3. <u>소속 직원 지휘·감독</u> ② <u>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u> ③ <u>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안건과 관련하여 정보열람을 소관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u> ④ <u>사회서비스원의 이익과 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지 못한다.</u> ⑤ <u>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u> 1. <u>사회서비스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u> 2. <u>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u> 3. <u>이사회 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u> 4. <u>사회서비스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u> 5. <u>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u> 6. <u>제5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u> 7. <u>이사가 사회서비스원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조례와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서비스원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u> 8. <u>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u>

현행	개정
(신설)	제14조(원장의 직무대행) ①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조제1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당연직 이사 2. 이사 중 연장자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직제규정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① 원장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생략)	제16조(이사회 구성) 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16조(<u>의결사항</u>)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u>재단의 사업계획</u>에 관한 사항 4. (생략) 5.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생략) 7.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u>재단의 수익사업</u>에 관한 사항 9~10. (생략) 11. 그 밖에 <u>이사장</u>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u>이사회</u>의 <u>의결사항</u>)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기구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u>사회서비스원</u>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u>사회서비스원</u>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7. <u>사회서비스원</u>의 제반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u>수익사업</u>에 관한 사항 9~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u>원장</u>이 부의하는 사항

현행	개정
제17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u>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u>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18조(이사회 소집) ①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2.〈삭제〉 ④ <u>이사회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u>시장의 승인을 받아</u>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이사회를 주재한다.

현행	개정
제18조(의결방법) ① (생략) 1. <u>재단</u>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u>재단</u>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u>재단</u>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생략) ③ 이사의 의결권은 <u>서면결의</u>나 위임에 의해 행사될 수 없다. 다만, -----.	제19조(이사회 의결) ① (현행과 같음) 1. <u>사회서비스원</u>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u>사회서비스원</u>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u>사회서비스원</u>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 다만, -----. ④ <u>이사회에 부의된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u> 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참여 제한) <u>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u> 1. (생략)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u>재단</u>이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3. (생략)	제20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u>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1. (현행과 같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u>사회서비스원</u>이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20조(회의록) ① 이사회는 재단 직원 중 간사를 두어 <u>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u>재단의 주된 사무소에</u>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 회의록) ① <u>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회의록을 <u>사회서비스원의 주된 사무소에</u>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설치) <u>사회서비스원</u>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2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u>재단의 규정</u>으로 정한다.	제23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u>사회서비스원의 규정</u>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
제5장 재산과 회계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산)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생략) 2. 설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다만, 기부금의 경우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u>주무관청의</u>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4. (생략) ③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 ④ (생략)	① <u>사회서비스원</u>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설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품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u>시장의</u>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4. (현행과 같음) ③ <u>사회서비스원</u>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u>시장의 승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u>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u> 2~3. (생략) ③ <u>재단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u>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u>사회서비스원의</u> 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u>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1. <u>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u> 2~3. (현행과 같음) ③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시하여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제25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5.(생략) 6.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③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기금) ① <u>사회서비스원</u>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u>사회서비스원</u>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5.(현행과 같음) 6.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u>사회서비스원</u>수익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③ <u>사회서비스원</u>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u>사회서비스원</u>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재원) 재단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_____.	제27조(운영재원) <u>사회서비스원</u>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_____.
제2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회계연도) <u>사회서비스원</u>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현행	개정
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사회서비스원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제29조(결산) ①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개정 2021. 10. 26.> 1~2.(생략)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개정 2021. 7. 30.>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30.>	제30조(사업실적과 결산)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u>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u>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현행과 같음) ② 사회서비스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u>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u>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31조(잉여금의 처리) ① 각 사업연도의 결산잉여금은 <u>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u> ② 사회서비스원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현행	개정
제31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3, 정원은 별표4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26.〉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2조(조직 및 정원) ① <u>사회서비스원</u>의 조직은 별표3, 정원은 별표4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 ② (삭 제)

현행	개정
제32조(직원의 채용 등)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직원의 채용) ① <u>사회서비스원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직원을 원장이 직접 임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u> ② <u>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u> ③ <u>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 없이 채용할 수 있다.</u> 1. <u>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수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종전에 해당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종전에 채용하였던 사람</u> 2. <u>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라 운영되던 사업을 양수한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종전의 사업자가 채용하였던 사람</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따르되, 그 밖에 직원의 임면·승진·복무·보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
제33조(겸직제한) <u>재단의 상근임원과</u>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u>상근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u>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u>사회서비스원의 원장과</u>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u>원장이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u>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3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u>재단의 임·직원</u>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u>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u>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u>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u>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u>시장의 허가</u>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재단해산) ①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② <u>재단</u>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u>보건복지부 장관</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해산) ①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② <u>사회서비스원</u>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u>허가</u>를 받아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u>해산 등기</u>를 마친다. ③ <u>해산 시 원장은 당연직 청산인</u>이 된다.

현행	개정
③ 재단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①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에 귀속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등에 증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37조(광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市報)에 이를 게재한다.	제39조(광고) 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나, 시 또는 사회서비스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5조에 따른 경영공시 사항과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회서비스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규정 제정) ①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 정원, 복무,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40조(규정 제정) ①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u>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u> ② <u>기구 및 정원, 임직원의 인사, 보수 체계, 재산의 변동 등 주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현행	개정
제39조(적용법령)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그 밖의 관계법규를 따른다. <개정 2020. 10. 7.>	제41조(적용법령)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그 밖의 관계법규를 따른다.
(신설)	제42조(준용) 정관이 시행되기 전 선임된 이사 및 임원들에 관한 지위는 잔임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u>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u>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u>시장의 허가를 받고</u>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u>재단</u> 설립일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사업계획 등) <u>사회서비스원</u> 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u>사회서비스원</u> 설립일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행	개정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u>재단</u>의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에 의한 <u>재단</u>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③ 정관 제6조제1항<u>제3호</u>의 이사 중 <u>근로자 이사</u>는 <u>재단</u> 설립 후 1년 내에 임명하며, 선임 및 임명 방법은 정관과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u>사회서비스원</u>의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에 의한 <u>사회서비스원</u>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③ <u>(삭제)</u>

〈별표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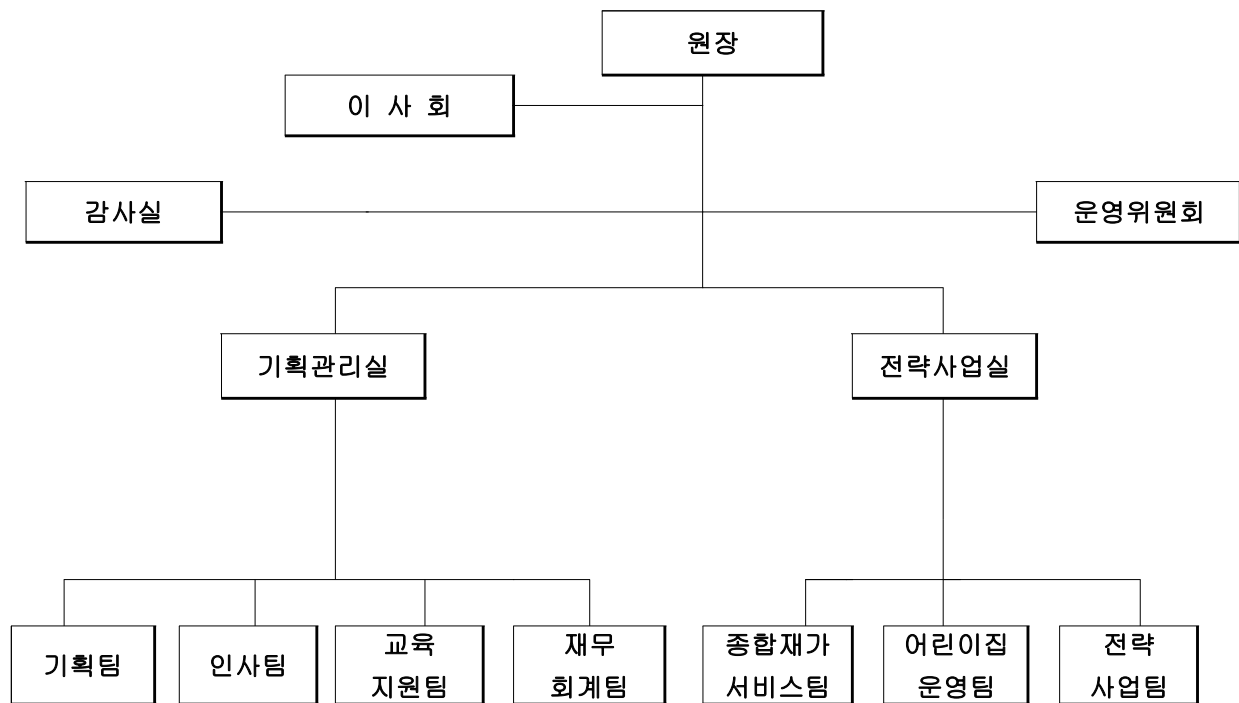
연번	구 분	내 역	출연내용	금 액	출연자	비고
1	기본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현 금 (예 금)	1,000,000,000원	서울특별시	설립출연

〈별표 2〉

현행 기본재산

연번	구 분	내 역	출연내용	금 액	출연자	비고
1	기본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현 금 (예 금)	1,000,000,000원	서울특별시	현행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와 같음

〈별표 3〉



※ 소속기관: 종합재가센터(12개소), 데이케어센터(2개소), 어린이집(7개소)

〈별표 4〉

정원표

가. 총괄표

총정원	원장	일반직·서비스지원직·보육직	전문서비스직	기능직
572	1	224	335	12

나. 일반직·서비스지원직·보육직

계	2급	3급	4급	5~6급
224	2	2	32	188

다. 전문서비스직 : 335명

라. 기능직 : 12명

[서면보고]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1-1

종합재가센터 운영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1-1-1

재가장기요양사업 운영

장기요양사업(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의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종합재가센터 12개소
- 사업내용: (재가장기요양사업)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제공
-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을 제공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제공		간호사가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	
신체활동지원		목욕 전		직접간호	
식사 및 투약관리, 개인위생활동, 몸단장,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활동 등		욕조준비, 목욕준비(이용자 상태관찰, 욕조로 이동, 옷벗기, 입욕)		욕창 및 상처소독, 배설관리, 영양관리, 질병관리	
인지활동지원		목욕 중		통합돌봄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		몸씻기, 얼굴, 손/팔, 발/다리, 가슴/배, 등/엉덩이, 머리감기		방문요양 욕구사정, 기능평가, 응급상황대처, 필요시 모니터링 동행	
일상생활지원		목욕 후		위드코로나 감염예방활동 점검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이용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세탁, 식사준비, 설거지		관리(물기제거, 옷입기), 주변정리		지속적인 감염예방활동, 긴급 돌봄지원단 교육 및 의료지원	
정서지원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작 성 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6925-3697 종합재가서비스팀장: 박정호 ☎2038-8698

담당: 정미정 ☎ 8707
백희란 ☎ 8022

□ 추진실적

('22.7.31. 기준)

시 설 명	개소 일시	요양보호사(명)				이용자 실적(건)	주요실적(누적,건)				
		현원	팀장	전일	파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심층 상담	일반 상담
합계	12개소	220	12	191	17	31,675	27,929	462	327	111	2,846
성동 종합재가 센터	'19.7.23.	22	1	20	1	4,589	3,998	-	327	17	247
은평 종합재가 센터	'19.8.28.	26	1	24	1	3,619	3,005	146	-	29	439
강서 종합재가 센터	'19.9.18.	21	1	16	4	3,928	3,278	86	-	6	558
노원 종합재가 센터	'19.10.23.	27	1	23	3	3,814	3,383	-	-	5	426
마포 종합재가 센터	'20.1.17.	17	1	15	1	2,323	2,142	19	-	4	158
영등포 종합재가 센터	'20.9.28.	18	1	17	0	1,843	1,743	-	-	3	97
송파 종합재가 센터	'20.9.28.	15	1	12	2	1,803	1,643	-	-	4	156
양천 종합재가 센터	'20.9.28.	18	1	16	1	1,689	1,338	107	-	11	233
도봉 종합재가 센터	'20.11.18.	18	1	16	1	1,783	1,594	69	-	5	115
중랑 종합재가 센터	'20.11.30.	17	1	15	1	2,264	2,136	-	-	12	116
강동 종합재가 센터	'20.12.14.	11	1	8	2	1,302	1,191	-	-	9	102
서대문 종합재가 센터	'20.12.14.	10	1	9	0	2,718	2,478	35	-	6	199

1-1-2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적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지원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 종합재가센터 사업대상: 등록 장애인 및 사업별 세부 요건에 부합하는 이용자
- 신규 사업대상: 미등록 장애인 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실질적 지원에 제한이 있는 돌봄 사각지대 장애인

○ 사업 내용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대상	•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주요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신체지원, 가사지원, 사회 활동지원) •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현황

(‘22.7.31. 기준 / 단위:명)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사(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건)			
	현원	팀장	전일	파트	총계	활동지원	심층상담	일반상담
합계	49	2	34	13	7,282	5,815	141	1,326
성동센터	27	1	18	8	3,507	2,995	68	444
노원센터	22	1	16	5	3,775	2,820	73	882

○ 추진실적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공적 서비스 역할 강화, 사각지대 지원
-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제공 및 적극개입사례(민간곤란)지원 강화
- 장애인 돌봄 공백에 따른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검토 및 추진방향

검토 및 추진방향	사업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상시지원체계 (24시간 돌봄체계) 마련	• 전문서비스직의 통상적 근무시간(9~18시) 외 다양한 근무형태 (야간, 주말) 운영
이용자 중심의 제도적 사각지대 지원	• 민간기관과의 동일사업 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 지원사업 검토 추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강화	• 적극개입사례 비율 확대(11.2% → 20%)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 적용	• 시행령에 따른 신규 운영 체계 적용

1-1-3

돌봄SOS사업 운영

종합재가센터에서 돌봄SOS센터와 연계한 긴급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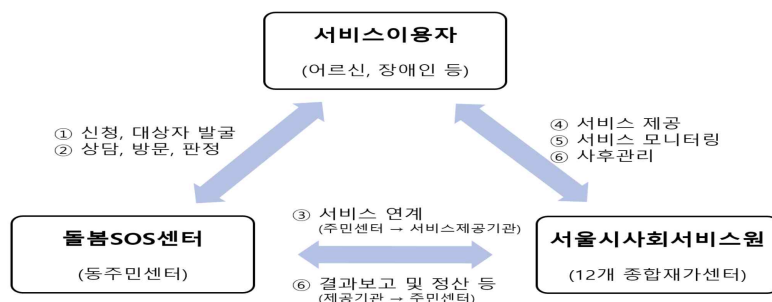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수행기관: 종합재가센터 12개소
- 사업대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 사업내용
 - 중장년(만 50~64세), 어르신(만 65세 이상), 장애인(만 6세 이상)

※돌봄SOS센터 서비스 적격 판단기준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사업내용

- 연계절차



• 돌봄SOS센터(동주민센터)
대상자 의뢰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제공

- 돌봄SOS 서비스 중 ‘일시재가’ 및 ‘동행지원’ 수행

구 분	서비스 제공 내용
일시재가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수발 서비스를 제공
동행지원	• 이용자의 필수적인 외출 활동에 서비스 제공인력이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

작 성 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 6925-3697 종합재가서비스팀장: 박정호 ☎ 2038-8698

담당: 박유정 ☎ 871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차별화된 돌봄SOS 서비스

- 돌봄SOS 서비스 질적 강화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등) 운영

구 분	내용	서비스 제공 내용
필수 방문 모니터링	서비스 이용자 방문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 기간 중 1회 방문 모니터링 진행 -대상자 행동 및 서비스 욕구 변화, 생활 환경 등 확인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 모니터링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돌봄SOS 서비스 종료 대상자 사후관리	• 전화 및 방문 사후관리 -돌봄SOS 서비스 종료 대상자 전수 사후관리 진행

- 돌봄SOS+ 코로나19의 긴급돌봄사업 확대 운영

대 상	서비스 제공 내용
• 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돌봄공백 발생 대상자 • 중위소득 120%까지 서비스 제공	• 돌봄SOS 체계 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일시재가, 동행지원)

☐ 추진실적

○ 돌봄SOS 서비스 중 ‘일시재가’ 및 ‘동행지원’ 서비스 수행

- 종합재가센터 12개소가 25개 전 자치구 돌봄SOS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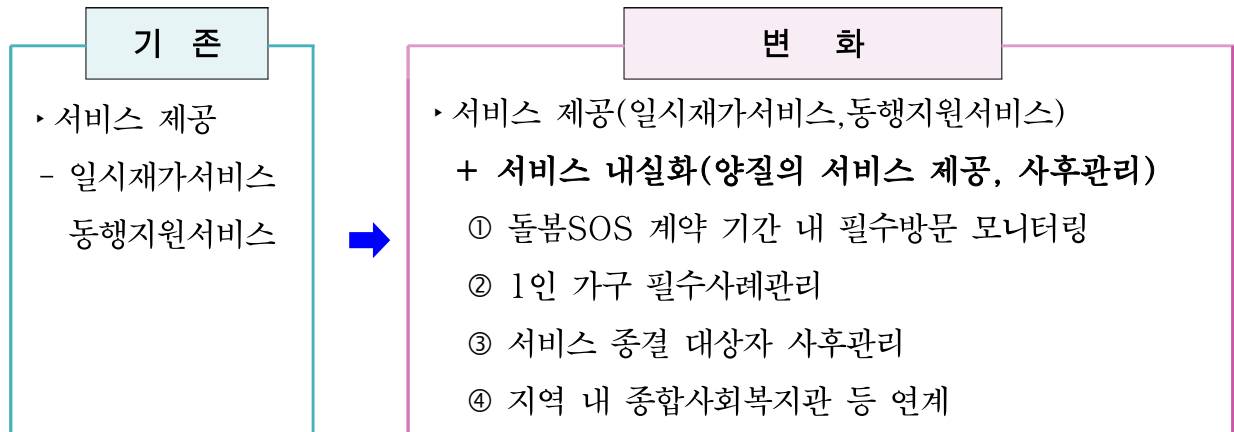
· 일시재가 및 동행지원 서비스 총 서비스 제공 689명, 9,621건 제공

(’22.7.31. 기준, 단위 : 명(건), 시간)

구분	연계 현황(명)				서비스 제공 건수
	계	서비스 제공		심층 상담	
		어르신	장애인		
일시재가 및 동행지원	1,331	683	6	642	9,621

○ 돌봄SOS 서비스 질적 강화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등) 운영

- ’22년 1월부터 돌봄SOS 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위기사례로 발전할 것을 예방
/ 필수 방문 모니터링, 종결 후 사후관리 제공, 사례관리 추진



·총 713건, 서비스 제공 690명, 481.8시간 제공(미청구 금액 10,782천원)

(’22.7.31. 기준, 단위 : 명(건), 시간, 천원)

구분	건(연인원)	명(실인원)	서비스시간	미청구수익
돌봄SOS 서비스 질적 강화	713	690	481.8	10,782

○ 돌봄SOS+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사업 확대 운영 (’22년 6월~)

- ’22.6월부터 돌봄SOS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까지 일시재가 및 동행지원서비스 제공 추진

대상 구분	기본돌봄	돌봄SOS	긴급돌봄
중위소득 85% 이하	장기요양 서비스	서울시 돌봄 SOS 서비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외 틈새돌봄서비스 (학대피해 아동, 노인)
중위소득 100% 이하 ※ 코로나 19로 한시적 제공			
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담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서비스	
소득구분 외		-	

·총 서비스 제공 108건, 서비스 제공일수 94일, 479시간 제공

(’22.7.31. 기준, 단위: 건, 시간)

구분	제공일수	건(연인원)	명(실인원)	서비스시간	미청구수익
돌봄SOS+	94	108	10	479	4,898

※ 돌봄SOS+ 전 자치구 확대 : 12개소(’22.6.)→25개소(’22.7.18.~)

1-1-4 치매대상자 관리계획

치매대상자에 대한 돌봄공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종합재가센터·데이케어센터 14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치매대상자)
- 사업내용

사업내용	세부내용	세부내용	수행 주체
치매관리 지원체계 운영	장기요양 사업수행 인력 치매전문교육 이수	· 장기요양사업 수행인력 치매 전문교육 이수로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소속 기관
	인지등급 이용자 적극지원	· 인지등급 이용자 지원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작업치료사 연계)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연계	· 인지등급 이용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및 지원 - 장기요양 등급 신청, 지문등록, 자원연계, 프로그램 참여 등	
	작업치료사 권역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대상자 선정, 방문 및 기능 검사 · 이용자·직원 상담 · 맞춤형 인지 활동 프로그램/활동자료 지원	작업 치료사
인지능력향상을 위한 인지학습지 '인지상정' 발간 및 교육	인지학습지 '인지상정' 및 지침서 발간	· 인지상정 3,4,5편 제작 · 인지상정 진행자용 지침서 제작 · 인지 활동 프로그램 안내서 제작	작업 치료사
	전문서비스직 역량강화 교육	· 인지학습지 '인지상정' 활용교육 · 교구활용 인지활동 교육 · 이론 및 사례 기반 교육 · 직원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 등	

※ 외부기관 교육은 민간지원 실적에 포함

□ 추진실적('22.7.31.기준)

○ 장기요양 사업수행 인력 치매전문교육 이수

- 치매교육 이수현황: 관리자 40명, 요양보호사 206명
- 치매교육 요양보호사 이수 비율 전체대비 94.1%

교육 구분	해당자	이수 관련 내역
전문서비스직 치매교육과정	요양보호사(전일, 반일)	전문서비스직 이수자 206명 / 전체인원 219명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전문서비스팀장	관리직 이수자 40명 / 전체인원 51명
관리자 치매교육과정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전문서비스팀장	관리직 이수자 46명 / 전체인원 51명

○ 치매이용자 돌봄 서비스 제공: 총 181명(16.8%) 진행중

- 치매이용자 총 181명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이용자 대비 16.8%

○ 작업치료사 권역별 사례관리 지원: 191회

- 권역별 치매대상자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례회의
- 사업별 사례관리지원 중 치매대상자 사례관리 지원 191회 제공

권역		작업치료사 권역별 사례관리 지원						
		치매관련 실적 소개	강서 치매대상자 사례관리지원	노원 치매대상자 사례관리지원	노원 활동지원 사례관리지원	발달장애 사례관리지원	성동 치매대상자 사례관리지원	성동 활동지원 사례관리지원
구분	총계							
1월	43	27	16	5	-	15	6	1
2월	39	28	20	4	1	9	4	1
3월	52	42	38	2	2	8	2	-
4월	54	45	37	5	-	9	3	-
5월	35	20	11	3	5	10	6	-
6월	31	16	9	3	3	12	4	-
7월	23	13	8	1	9	1	4	-
계	277	191	139	23	20	64	29	2

- 권역별 치매대상자 관리 지원체계 운영

연번	담당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1	노원(1권역)	노원, 도봉, 강동, 송파
2	강서(2권역)	강서, 강서든든, 양천, 서대문, 은평
3	성동(3권역)	성동, 마포, 초록숲, 영등포, 중랑

○ 인지학습지 '인지상정' 및 지침서 3~5편 책자 개발: 발간 완료

- '22년 두뇌훈련 인지학습지 '인지상정' 3~5편 작업치료사 지속 개발
- 3편(지남력), 4편(집중력), 5편(시지각) 영역으로 구성하여 제작 및 발간 완료

○ 전문서비스직 역량강화 교육: 18회

- 전문서비스직 인지상정 활용교육 및 교구활용 인지활동 교육 지원
- 인지상정 활용교육을 통한 학습지 활용성 증대 및 전문성 강화 도모

1-1-5 적극개입사례 확대

이용자 중심의 적극개입(민간곤란)사례 지원 확대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수행기관: 종합재가센터 12개소
- 사업대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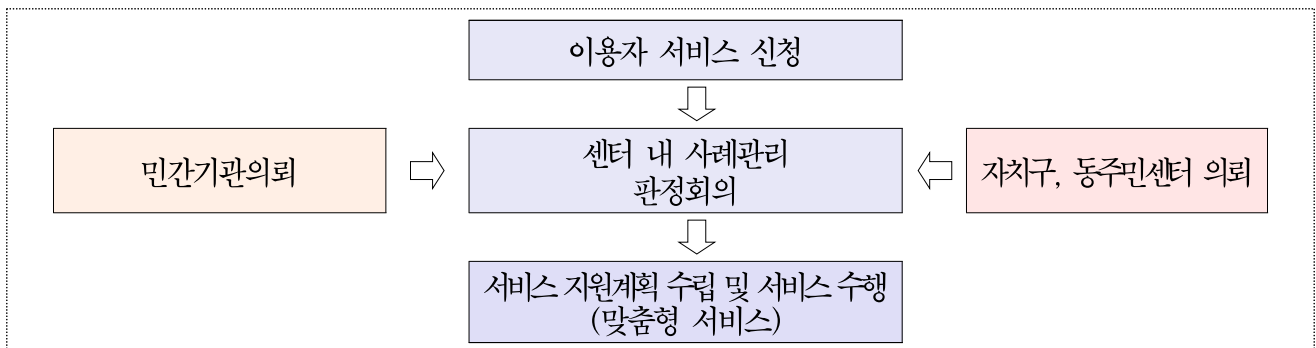
〈 적극개입(민간곤란)사례 유형 〉

- 도전적 행동, 고강도, 일부 최중증(기저귀 케어, 와상 심각) 치매,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명 이상의 다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다인서비스 제공
- 주거환경열악(서비스 제공이 힘든 좁은 집, 위생상태 심각 등)
- 단회기, 단시간 이용자 서비스 제공
- 단일 서비스로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

○ 종합재가센터 역할 재정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 (가칭) 00구 모두돌봄센터 명칭변경 및 긴급돌봄·제도 외 사각지대 돌봄 강화
- 중장기 목표('24년까지) 최대 50% 적극개입사례 제공 추진
- '22년 적극개입사례(민간곤란) 비율 최대 20%까지 지원

○ 사업추진체계



작성 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 6925-3697 종합재가서비스팀장: 박정호 ☎ 2038-8698

담당: 황보승 ☎ 8547

□ 추진실적

○ 적극개입(민간곤란)사례 총 216명(1,135명중 216명(19.0%) 제공)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월
사례수	27명	122명	176명	216명
전체대비	9.4%	11.1%	11.2%	19.0%

(’22.7.31. 기준.누적)

센터명 \ 서비스명		이용자 수(명)						서비스 횟수(회)	서비스 시간(h)
		합계	방문 요양/ 목욕	방문 간호	장애 인 활동 지원	돌봄 sos			
						노인	장애인		
종합재가센터 사업실적(B)		1,135	364	21	61	683	6	44,614	186,824
적극개입 사례	비율(A/B)	19.0	24.3	23.8	24.6	16.7	16.6		
	이용자수 계(A)	216	81	5	15	114	1	11,186	32,218.8
성동		21	4	5	10	1	1	1,840	5,509
은평		21	9	0	0	12	0	391	1,128.5
강서		22	9	0	0	13	0	1,003	2,710.5
노원		13	5	0	5	3	0	1,075	4,380.5
마포		13	4	0	0	9	0	486	1,109.3
영등포		29	12	0	0	17	0	1,868	5,341
송파		29	5	0	0	24	0	812	2,281
양천		26	5	0	0	21	0	782	1,502.5
도봉		2	2	0	0	0	0	330	1,476
중랑		11	4	0	0	7	0	595	1,864
강동		12	9	0	0	3	0	638	1,750.5
서대문		17	13	0	0	4	0	1,366	3,166

노인분과위원회 및 장애인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소속기관 사업 및 운영
방향 자문을 진행, 사업방향 설정 및 운영에 반영

□ 노인분과위원회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분기별1회)
- 사업내용
운영 사업의 자문확대 운영, 내·외부 자문기구 운영 등 소통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식 논의기구 역할 수행
- 운영방법: 위원장 주재 사업 관련 자문기구 운영
- 위촉위원: 노인분과위원 16명

위원회 구성 및 인원(단위:명)		노인분과위원회
임기(2년)		‘22.3.4.~’24.3.3.
구분	학계	4
	현장 전문가	7
	관계기관운영자	2
	노동자	1
	서울시관련부서장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1
총 인원		16

○ 사업진행

	일시	참석자	내용
1	‘22.3.4.(금) 10:00-12:00	총24명 15명(노인분과위원) 본부 9명(원장 외 8명)	돌봄24 운영계획 및 종합재가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명칭변경 논의
2	‘22.5.27.(금) 10:00-12:00	총15명 11명(노인분과위원) 본부 4명(원장 외 3명)	종합재가센터의 기능 재정립 및 명칭 변경 논의

○ 사업 반영사항

회차	일자	주요안건	반영사항
1차	'22.03.04.	① 대표이사 중점추진 「돌봄24」에 따른 개편 의견 · 공공성 강화 및 기능 확대 동의 및 차별성 고려하여 사업 운영 필요 ② 종합재가센터 명칭변경 · 공급기관과의 차별성을 강조,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필요 ③ 「통합」이라는 용어 · 용어 자체 오해의 소지가 있음. 전체성이 나타나는 용어사용 의견 ④ 재가중심서비스에서 공공성 강화 및 기능확대: 모두 대상 확대 · 긴급돌봄제공 제도 외 사각지대 · '재가' → '모두'반영	① 기능재정립 관련 전문가 회의 · 센터장 회의, 외부자문 회의 시 관련 의견을 논의하여 기능 재정립 계획 시 반영 <결과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재정립 및 명칭 변경 경과보고(1차) 예) OO구 모두돌봄센터
2차	'22.05.27.	① 민간기관과의 차별성 관련 의견 · 다면적 도형으로 사업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표현을 권유함. · 긴급돌봄 통합적 접근의 시각, 반영 ② 서비스 인력 역량강화 중요 · 기능재정립 후 사업 확대 및 대상 변경 시 투입 전 인력의 역량강화 반영 ③ 명칭을 변경 · 명칭 앞이나 뒤에 OO구를 붙이는 것을 권유함. OO구 모두돌봄센터 반영	① 회의 결과 반영하여 결과물 산출 <결과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재정립 및 명칭 변경 경과보고(2차)

□ 장애인분과위원회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분기별 1회)
- 사업내용
장애인복지사업 자문 확대 운영, 내·외부 자문기구 운영 등 소통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식 논의기구 역할 수행
- 운영방법: 위원장 주재 사업 관련 자문기구 운영
- 위촉위원: 장애인분과위원 11명

위원회 구성 및 인원(단위:명)		장애인분과위원회
임기(2년)		'22.6.28~'24.6.27
구분	학계	3
	현장 전문가	2
	관계기관운영자	3
	노동자	1
	서울시관련부서장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1
총 인원		11

○ 사업진행

	일시	참석자	내용
1	6.28.(화) 15:00-17:00	총12명 8명(장애인분과위원) 직원 4명(원장 외 3명)	공공의 돌봄 강화 및 장애인 분야 사업 관련 논의

○ 추진실적

-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학계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장애인분야 신규 사업 관련 의견 청취
- 신규 분과 위원 위촉
- 장애인 지원 사업 및 종합재가센터 기능 재정립 등 사업 방향 구체화
- 분과위원 내 발달 장애인 지원 전문가 추가 선임

- 장기요양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 연중
- 돌봄SOS 서비스 제공 비율 확대 운영 : 연중
 - '21년 종합재가센터 총 서비스 제공 건수 중 돌봄SOS서비스 비율 25.6% → '22년 최대 35%까지 추진
- 돌봄SOS 확대 운영을 통한 돌봄 연속성 및 공공전달체계 확립 : 연중
 - 돌봄SOS+ 코로나19외 긴급돌봄 서비스 범위 확대 추진
 - ▶ 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 시민 대상 전 자치구 확대운영
- 적극개입(민간곤란)사례 확대 운영 : 연중
 - '22년 적극개입사례(민간곤란) 비율 최대 20%까지 지원
- 치매관리 지원체계 운영 : 9~12월
- 인지상정 발간 완료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9~12월
- 종합재가센터 명칭 변경 : 10~12월
 - (가칭) '모두돌봄센터' 명칭변경 및 기능 재정립(확대) 추진
- 노인분과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 장애인분과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 : 12월

작성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 6925-3697종합재가서비스팀장: 박정호
☎ 2038-8698담당: 황보승 ☎ 8547, 박유정 ☎ 8715
정미정 ☎ 8707, 양지연 ☎ 8624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
- 수행기관: 마포구립 초록숲데이케어센터, 강서든든데이케어센터
- 사업내용: 데이케어센터에서 이용자를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돌봄 제공
-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기 도움, 몸씻기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건강 및 간호관리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물리치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작업치료

☐ 추진실적('22.7.31.기준)

○ 데이케어센터 운영현황

시 설 명	개소 일시	소재지	이용자현황(명)		주요실적(누적,명)		
			정원	현인원	운영 일수	출석	이용 상담
합계			56	46	277	5,102	441
마포구립 초록숲 데이케어센터	'20.9.9.	마포구 마포대로 11길44-81 (아현건강문화센터), 지하1층	31	27	135*	3,153	394
강서구립 든든 데이케어센터	'20.11.2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2~3층	25	19	142	1,949	47

*초록숲데이케어센터 코로나19로 인한 센터 휴관으로 강서든든데이케어센터와 운영일수 차이 발생

☐ 향후계획

- 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서비스 진행

: 연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및 서울 특화 공보육 운영모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중심·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이용 영유아 및 부모, 보육교직원)
- 사업방향
 - (공공보육) 보육사업·취약보육 운영 내실화를 통한 서울 특화 공보육 운영모델 구축
 - (품질제고) 재단-어린이집 간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 (업무개선) 소속기관 지원, 업무 간소화 추진 등 보육교직원 업무환경 개선
 - (소통협력) 보육분야 유관기관 MOU체결 및 이해관계자 협력·소통

□ 추진실적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 총괄

(‘22. 8. 31. 기준 / 단위:명)

어린이집명	개원일	보육원아		보육교직원			취약보육 (운영현황)	서울시 보육정책 시범사업 참여현황
		정원	현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	현원			
합계		519	402	104	85	26		
노원든든	'20.3.1.	45	34	12	10	2	야간연장 장애통합	교사대 아동비율개선(만0세)
서대문든든	'20.5.1.	71	66	15	13	3	야간연장 시간제보육	교사대 아동비율개선(만3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인큐베이팅)
새우개하나	'20.7.1.	68	33	12	9	4	야간연장 장애통합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응암행복	'20.7.1.	98	80	21	20	1	야간연장 장애통합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서울형 전임교사지원
영등포든든	'20.9.1.	65	50	13	7	5	야간연장 다문화보육	생태친화 거점 어린이집
강동든든	'20.9.21.	95	84	19	16	5	야간연장 장애통합	교사대 아동비율개선(만3세) 서울형 전임교사지원
송파든든	'21.3.1.	77	55	12	10	6	야간연장 장애통합	교사대 아동비율개선(만0세)

* (정원외) 서울시 시범사업교사(6), 육아/난임휴직 대체교사(4), 담임·장애반교사(4), 보조교사(8), 보육도우미(4)

작 성 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 6925-3697 어린이집운영팀장: 김경옥 ☎ 2038-8717

담당: 안수빈 ☎ 2038-8743
송주영 ☎ 2038-8718

2-1-1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취약보육’ 운영 활성화 및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취약보육 우선실시 및 운영 내실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소속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이용 영유아 및 부모, 보육교직원)
- 사업내용
 - (취약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 보육, 야간연장 보육, 시간제 보육*
 - *서대문문뜬어린이집 위탁 계약 시 취약보육 유형으로 포함되어 실적에 산입하여 관리함
 - (발달모니터링) 취약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상 문제 조기 진단·중재 지원

□ 추진실적

- 수요자 맞춤형 취약보육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실현
 - 취약보육 우선실시를 통한 다양한 영유아가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

(‘22. 8. 31. 기준(누계) / 단위:명,건,시간)

구분	장애아 보육							다문화 보육					야간연장 보육		시간제보육	총(누계)
운영 기관	노원 문뜬	서대문 문뜬	새우개 하나	응암 행복	영등포 문뜬	강동 문뜬	송파 문뜬	서대문 문뜬	새우개 하나	영등포 문뜬	강동 문뜬	송파 문뜬	새우개 하나	강동 문뜬	서대문문뜬	92명 /106건 /351시간 15분
이용 현황	1	1	6	6	4	3	3	2	2	26	2	2	1	5	28명/106건/ 351시간15분	
소계	24							34					6			

- 서울시 다문화 및 장애 영유아 보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약보육 운영기관 2개소 신규지정 (장애통합:새우개하나, 다문화통합:영등포문뜬)

〈취약보육 운영기관 연도별 지정 현황: 4개 유형/ 8건〉

2020년(5건)	2021년(신규1건)	2022년(신규2건)
• 장애통합어린이집: 2건 • 야간연장어린이집: 2건 • 시간제 보육 위탁운영기관: 1건	• 장애통합어린이집: 1건	• 장애통합어린이집: 1건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1건

작 성 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 6925-3697 어린이집운영팀장 김경옥 ☎ 2038-8717

담당: 안수빈 ☎ 2038-8743
송주영 ☎ 2038-8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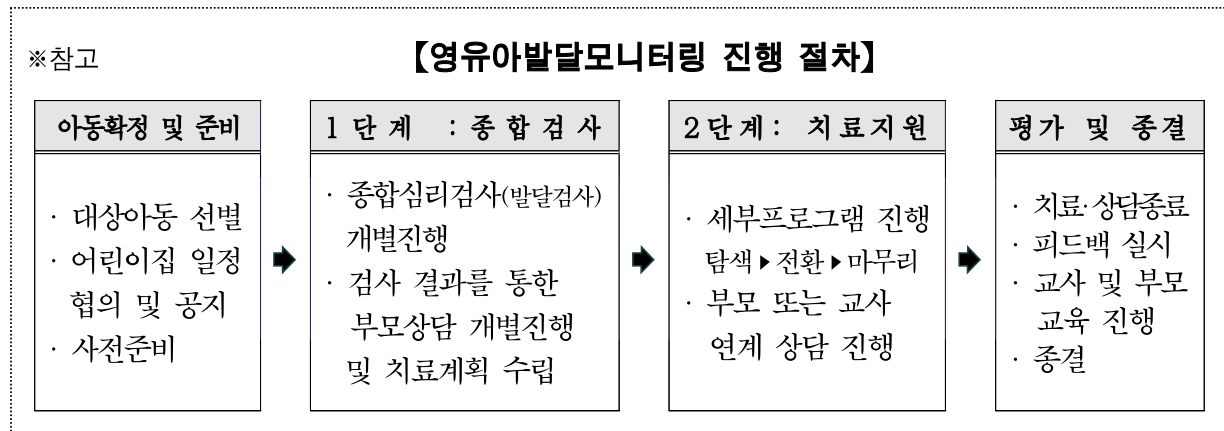
○ 영유아 발달모니터링 지원사업을 통한 취약보육 영유아 개별화 지원

- 전문기관 발굴을 통한 소속기관 취약보육 영유아 개별화 지원, 부모·교사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역량강화

〈영유아 발달모니터링 사업추진 현황(2021~2022)〉

2021년 (3개소/6회/11명)	2022년 (6개소/16명/96회차) 진행중
• '21년 보육교직원학습공동체 사업을 통한 발달모니터링 시범운영 진행	• 발달모니터링 신규사업 계획 수립('22. 2월) • 발달모니터링 사업운영기관 선정*('22. 6월) • 발달모니터링 참여대상 선정(6개소/16명) • 발달모니터링 사업 세부계획 수립('22. 7월) • 발달모니터링 사업 운영('22. 8월~)

* (한양대학교 부설기관) 한양아동가족심리건강센터/ 업무협약 체결('22. 8. 16.)



□ **향후계획**

-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및 이용원아 모집 홍보 : '22. 12월
- 영유아 발달모니터링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 '22. 12월

2-1-2 서울시 보육정책 시범사업 참여

‘서울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보육정책 시범 사업에 참여하여 선도적 정책 수립 기반을 지원하고 공공의 책무성 이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소속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 사업내용: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개선, 서울형 전임교사, 생태친화 어린이집

□ 추진실적

- 서울시 보육정책 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서울 특화 공보육 모델 기반 마련

〈서울시 보육정책 시범사업 참여 누계 현황(2021~2022년)〉

2021년(3개사업/7건)	2022년(4개사업/11건)
-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5개소 - 다함께 어린이집: 1개소 - 시간제 보육 위탁 기관: 1건	-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5개소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3개소 -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사업: 2개소 - 생태친화 어린이집: 1개소

〈사업유형별 참여어린이집 현황〉

보육정책 시범사업 유형	참여 어린이집	선정일
1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3개소	새우개하나 어린이집 '21. 8. 31.
		응암행복 어린이집[신규] '22. 2. 21.
		서대문든든어린이집*[신규] '22. 8. 1.
2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5개소	노원든든 어린이집 0세
		서대문든든 어린이집 3세
		영등포든든 어린이집 3세
		강동든든 어린이집 3세
		송파든든 어린이집 0세
3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2개소	응암행복 어린이집[신규] '22. 3. 10.
		강동든든 어린이집[신규]
4 생태친화어린이집	1개소	영등포든든 어린이집[신규] '22. 2. 24.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인큐베이팅 기관 선정

□ 향후계획

- 서울시 보육정책 시범사업 운영 및 결과보고 : '22. 12월

2-1-3 보육사업 중점 추진사항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24」 보육사업 추진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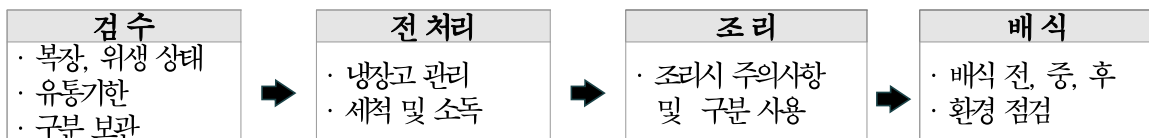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소속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 사업내용: 조리실 식품위생 안심ZONE, 영유아 안과검진, 종이서류 없는 어린이집 운영

□ 추진실적

- 「조리실 식품위생 안심ZONE」 지표 점검 실시: 3회(대면1회, 서면2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리실 식품위생 안심존 지표를 통한 점검 실시
(4단계 지표를 통한 점검)



- 「영유아 안과검진」 운영을 통한 건강점검 시스템 가동: 6개소/303명

- 월1회 안과 전문의 방문을 통한 사시, 약시, 굴절이상 등 검사 진행

※ 정밀 안과 진단이 요구되는 영유아 발견 건수: 18명



색각이상 검진



사시 검진



영아 검진



시력 검진

- 「종이서류 없는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교직원 업무경감

- 어린이집 평가제 필수 구비서류 67종 중 17종 ☞ 13종으로 통합 전산화
- 재단-어린이집 간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DB관리 효율화: 9종

□ 향후계획

- 사업 추진 결과보고 : '22. 12월

2-1-4 급·간식 차별화 운영

소속기관 국공립어린이집의 급·간식 관련 품질제고를 통하여 이용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안심 보육 환경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소속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 사업내용
 - 급·간식 관련 모니터링, 위생점검, 안전교육, 특화식단, 단가 적정선 유지를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안심 보육 환경 구축

☐ 추진실적

- (모니터링) 이용자 부모모니터링을 통한 급·간식 품질관리: 7개소(연중)
 - 이용자(부모)를 통한 급·간식 직접 배식, 식자재 검수 등 실시
- (위생점검) 다양한 주체를 통한 위생점검으로 안심 조리실 구축: 3회
 - 본부, 원장, 조리원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한 4단계 위생점검 실시
- (안전교육) 급·간식 교육 강화로 전문성 확보 및 이해증진: 3회/23명
 - 소속기관 조리원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전문교육 실시 및 사례공유
- (특화식단)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단 제공: 7개소/29종
 - 1식 4찬, 기관별 특화식(친환경식, 발효식 등), 영양(단백질, 칼슘)강화식단, 저염·저당식, 푸드브릿지(편식개선식) 제공
- (단가유지) 기준대비 단가상향 유지를 통한 고품질 식재료 제공: 평균 4,026원
 - 평균단가 상향유지를 통한 특화식단 운영 및 국내산·친환경 식재료 제공

※참고

- 2022년 보건복지부 급간식비 평균단가: 2,050원(영아1,900원, 유아2,200원)
- 2022년 서울시 급간식비 평균단가: 2,543원(영아2,090원, 유아2,997원)

☐ 향후계획

- 급·간식 차별화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 '22. 12월

2-1-5 보육과정 장학 추진

소속기관 보육교직원 대상 장학 실시를 통한 역량강화 및 보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이루어 영유아에게 “아이중심 놀이중심 보육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소속기관 7개소 보육실 35개반 담임교사
- 장학내용: 평가제 1영역(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5개 지표 18개 항목 컨설팅
- 컨설턴트: 보육분야 외부전문가 및 소속기관 원장, 어린이집운영팀장

☐ 추진실적

- 보육과정 장학을 통한 놀이 상호작용 지원(컨설팅): 2회/128명(누계)

〈보육과정 장학 내용〉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평가지표(5개 지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계획 및 실행, 놀이 및 활동지원,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보육과정 평가

- 대상별 기대효과 달성 및 아이중심 놀이중심 보육환경 제공 기반 마련

〈대상별 사업효과〉

(영유아) 질 높은 상호작용 및 다양한 보육활동 제공을 통한 놀권리 보장
(교 사) 보육 전문가 평가를 통한 자기반성 및 보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원 장) 보육과정 운영·지원에 대한 원장역량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 제고

☐ 향후계획

- 보육교직원 심화 장학 진행 : '22. 8월~10월
- 사업 결과보고 : '22. 12월

작성 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 6925-3697 어린이집운영팀장: 김경옥 ☎ 2038-8717 담당: 이여경 ☎ 2038-8405

2-1-6 보육분과위원회 운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민관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연3회)
- 운영내용: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사업 주요 현황보고 및 논의진행
- 위촉위원: 보육분과위원 16명
 - (위원구성) 전문가(4), 보육단체(4), 원장 및 교사(4), 이용자(2), 당연직(2)
 - (임 기) '21. 9. 9. ~ '23. 9. 8. (2기)

☐ 추진경과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분과위원 구성 계획 수립 ('19. 6. 18.)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분과위원 신규 위촉(1기)('19. 9. 9.)
- 2019년 제1차 보육분과위원회 개최('19. 9. 9.): 22명 참석
- 2020년 제1차 보육분과위원회 개최('20. 12. 17.): 16명 참석
- 2021년 제1차 보육분과위원회 개최('21. 4. 15.): 10명 참석
- 2021년 제2차 보육분과위원회 개최('21. 12. 10): 18명 참석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분과위원 신규 위촉(2기)('22. 3. 31.)
- 2022년 제1차 보육분과위원회 개최('22. 3. 31.): 19명 참석
- 2022년 제2차 보육분과위원회 개최('22. 8. 30.): 17명 참석

☐ 향후계획

- 2022년 제3차 보육분과위원회 진행 : '22. 11월

3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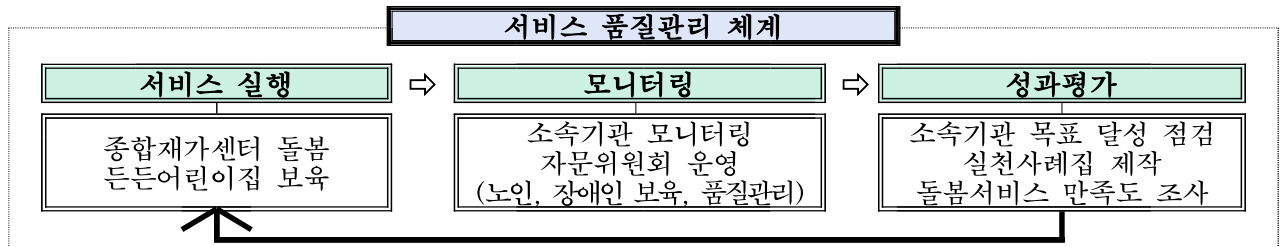
3-1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강화

사회서비스원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추진체계


☐ 추진실적

- 소속기관(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 모니터링: 11회
- 자문위원회 운영: 4회(노인분과, 장애인분과, 보육분과)
- 소속기관 2022년 목표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 2회
- 소속기관 2021년 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선계획 점검
 - 소속기관별 만족도 개선방안 계획 수립 및 목표 실행가능성 검토회의 운영
- 2022년 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수행중
 - 대상: 이용자·보호자 500명, 직원 전체(전직원)/용역: 22. 5월~10월

☐ 향후계획

- 소속기관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확대 : 연중
- 2022년 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추진 : '22.5~10월
- 돌봄서비스 실천사례집 발간 : '22.8~12월
- 돌봄서비스 목표 달성 점검 : 연중(총 4회)

작성 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 6925-3697

전략사업팀장: 한다한 ☎ 2038-8569

3-2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및 활동 진행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3-2-1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녹음장비 보급

업무로 인한 감정노동에 대해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녹음장비를 도입·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4월~12월
- 사업대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
- 사업목적: 업무와 관련하여 제 3자로 인한 감정노동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
 - ※ 산업안전보건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조례,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 라인등
- 시범운영: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후 종사자에게 지급
 - ※ 서울시 조례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이나 제3자로 인한 감정노동으로 인해 건강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 추진실적

-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사원증형 녹음장비 보급: 4곳 150대→14곳 150대
 - 사원증형 녹음장비 도입: 간단한 사용법과 휴대하여 상황발생시 바로 사용가능
 - 녹음장비 보급 관련 자문위원회 결과 종합재가센터 4곳 150대 시범 보급('22. 4. 8.)
 - 시범적용 확대를 위해 종합재가센터 12곳, 데이케어센터 2곳 배부('22. 5. 4.)
 - 상반기 기관별 종사자 대상 활용 교육 및 시범운영 실시,이용자 사전안내
- 녹음장비 총 44회 활용
 - 감정노동 발생 우려 상황으로 기관장 재량으로 반출(4건), 녹음장비 사용 연습 반출(40회)
 - 녹음장비 활용 과정에서 감정노동 상황 미발생

☐ 향후계획

- 녹음장비 반출현황 조사 및 사용의견 취합 : ~'22.9월
- 녹음장비 모니터링 통한 확대보급 예정 : '22.9월~12월

종사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감정소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돌봄프로그램을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4월~11월(총 6회차)
- 사업대상: 재단 종사자 150명
- 사업목적: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과 감정소진 회복

☐ 추진실적

- 일시: 2022년 4월~8월(총 4회 운영)
- 장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양평치유의숲(양평군 황거길 262-10)
- 참여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중 참여희망자 93명
- 연계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코로나19 대응기여자를 위한 숲케어 지원사업」
- 주요결과
 - 총 8회차 중 4회차 운영(93명)
 - 참여자 만족도: 일정 및 장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높음(8.9점/10점)
 -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직원 간 소통’, ‘나를 돌아보게 됨’ 등 긍정적 평가가 많았음
 - (업무협약) 국립 양평치유의 숲

☐ 향후계획

- 마음돌봄프로그램 운영 : ~'22.10월
- 차년도 마음돌봄프로그램 욕구조사 실시 : ~'22.11월
- 사업평가 및 차년도 업무 추진방향 회의 : ~'22.11월

3-2-3

감정노동 심리지원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종사자의 감정노동 예방을 위한 심리점검 및 전문상담 기관 연계 지원을 통해 감정노동으로부터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5월~7월

○ 사업대상: 소속기관 신청 종사자

○ 사업내용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마음건강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정보제공 등
(심리지원 상담연계 체계) ※긴급상담 등 필요시 교육지원팀 연계하여 상담기관 의뢰

- 대상: 업무중 감정노동 상황 발생으로 **심리상담 희망자**

또는 마음안심버스사업에서 발굴된 **추가 심층상담 희망자**

☐ 추진실적

○ 마음안심버스: 4개소 46명 참여

- 심리검사 및 정보안내 37건, 현장 방문상담 9건, 관계기관 연계 및 정보제공 등
- 전반적 만족도: 평균 90점(현장 방문형 심리검사 및 상담에 대한 만족감 높음)
- 추가 심층상담 희망자: 총 5명(연계: 동북심리지원센터,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 현장 감정노동 상황 발생에 따른 심리지원 상담 연계: 총 4명

- 민간 심리상담 협약기관(허그맘) 연계

○ 관계기관 사업평가회 및 간담회('22.8월)

☐ 향후계획

○ 차년도 감정노동 연계체계 계획 수립

: ~'22.12월

작 성 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 6925-3697 전략사업팀장: 한다한 ☎ 2038-8569

담당: 곽미정 ☎ 6949-6325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및 활동 진행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재직 중인 종사자, 재단이 관리하는 시설
- 사업내용: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및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 진행
 -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조례, 행정안전부 지침 등

☐ 추진실적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2022 개정 수립
 -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 전 소속기관 산업재해 발생 대응 교육 및 자율 소방교육 실시
 - '22년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교육' 안전보건 담당자 이수
- 실태점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 및 체계적 안전관리 도모
 - 소속기관 21개소 상반기 정기 시설점검(소속기관 자체점검→본부 방문점검 실시)
 - 시설점검 결과 반영 개선조치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 ~'22.11월
- 소속기관 시설안전점검 : 연중
- 위험성평가 실시 : ~'22.12월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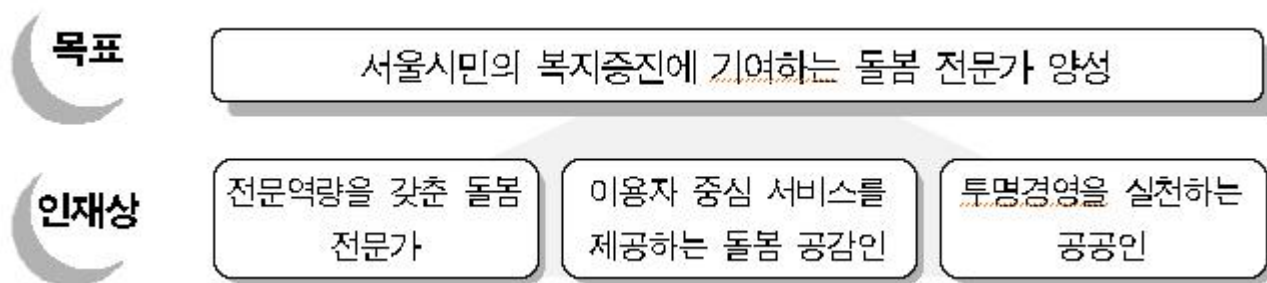
3-3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서비스를 책임지는 돌봄 전문가로서 직무역량과 공직가치관을 갖춘 인재 양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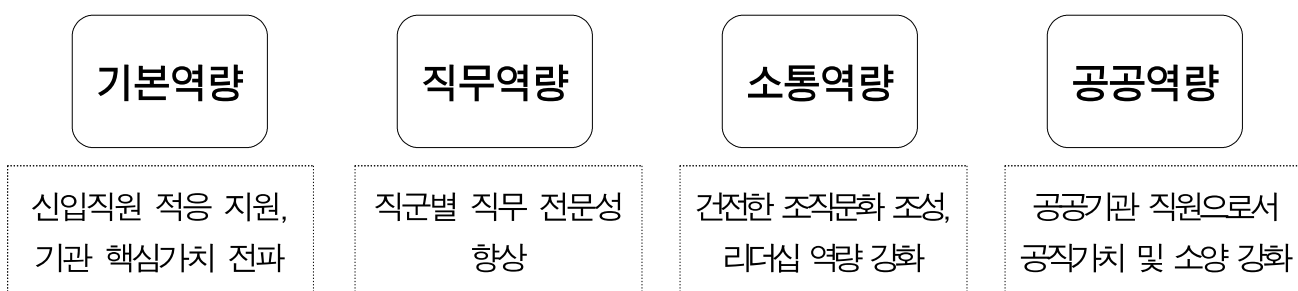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 사업내용: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돌봄 전문가 양성

□ 교육훈련 목표 및 인재상



□ 교육훈련과정 및 내용



□ 추진실적

('22. 8. 31. 기준)

교육훈련과정	횟수(건)	인원(명)	교육훈련과정	횟수(건)	인원(명)
기본역량	10	66	소통역량	4	45
직무역량	48	275	공공역량	20	844
전체				82	1,230

□ 2022년 교육훈련 체계

구분	주요 교육훈련과정	교육 내용
기본역량	신입직원 공통교육	· 온라인 공통교육(수시 운영) · 입사 시기별 2일 입문교육
	기관 핵심가치 특강	· 기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핵심 주제 특강
직무역량	전 직원 (일반행정직·전문서비스직·서비스지원직·보육직)	· 전문 강사 활용 전문서비스직 직무교육 (감염관리, 응급상황 대처, 신체활동지원 등) ·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직무교육 · 실습콘텐츠 영상강의 이러닝 교육 ·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 공통 주제별 직무 특강(공문서 작성 등) · 마이크로러닝 직무교육 과정 운영
	연수 운영	· 서울시립대학교 연수비(등록금) 지원
소통역량	비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 장기 휴직 후 복직자 직무적응 교육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개도교육
	리더십 역량강화	· 긍정적 조직문화 선도 리더십 교육 · 마이크로러닝 리더십 과정 운영
	소통 및 문제해결 역량 강화	· 조직문화 활성화, 의사소통 워크숍
공공역량	공직가치관 강화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5시간 이상) · 관리자급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 마이크로러닝 형태 교육자료 자체 제작·배포
	법정 및 의무교육	· 성희롱 예방 등 11개 재단공통 과정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 향후계획

- 현장 밀착형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운영 지속 : 연중
- 투명 경영 및 공직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확대 : 연중
- 소통·문제해결 역량 강화 리더십 교육 및 워크숍 운영 : 연중
- 기관 핵심가치 특강 및 입사시기별 신입직원 교육 운영 : 연중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여
민관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대상: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사업내용
 - (경영컨설팅) 법률, 노무, 회계, 교육 등 경영컨설팅 및 상담 지원
 - (교육지원)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 교육지원개요 및 추진실적(※상세 실적 붙임 참조)

1. 소속 직원 파견 교육

- (대상)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사회복지기관 직원 및 이용자
- (내용) 이용자 인지지원 프로그램 등 요청 주제별 교육 실시(1회 1~2시간)
- (방법)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파견 교육 운영
- (실적) 작업치료사 파견 인지상정 학습지 활용 교육 44회(553명)

2. 서울시사회서비스원-건양대학교 자체개발 온라인 실습교육 콘텐츠 제공

- (대상) 전국 장기요양·사회복지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 (내용) 자체 개발 온라인 실습교육 콘텐츠 학습(30분 내외, 70개 이상 강의)
- (방법) 신청시 온라인 학습 링크 제공
- (실적) 4개 기관 신청 및 학습 진행중(53명)

☐ 향후계획

- 전문가 경영컨설팅 및 상담지원 : ~'22.12월
- 강사 파견 교육 및 온라인 실습교육 콘텐츠 제공 등 : ~'22.12월

붙임
민간지원사업 추진 상세 내용
☐ **소속 직원 파견 교육 운영 실적**

('22.8.31. 기준 / 단위:명)

소속 작업치료사 진행 '인지상정 학습지 활용교육'				
연번	기관명	주요 내용	교육일자	인원
1	면목종합복지관	'인지상정1' 활용교육	2022.1.27.(목)	26명
2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인지활동의 이해 및 실습	2022.3.18.(금)	6명
3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인지상정1' 활용교육	2022.4.20.(수)	25명
4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인지상정2' 활용교육	2022.4.21.(목)	25명
5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인지상정1' 활용교육	2022.5.3.(화)	15명
6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인지상정1' 활용교육	2022.5.10.(화)	15명
7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5.11.(수)	5명
8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5.11.(수)	7명
9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인지상정1' 활용교육	2022.5.17.(화)	12명
10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5.18.(수)	8명
11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5.18.(수)	7명
12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인지상정1' 활용교육	2022.5.24.(화)	11명
13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5.25.(수)	8명
14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5.18.(수)	5명
15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인지상정1' 활용교육	2022.5.31.(화)	11명
16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미아센터)	"인지상정1,2 활용 및 교구활용 교육"	2022.6.7.(화)	14명
17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6.8.(수)	8명
18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6.8.(수)	5명
19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미아센터)	"인지상정1,2 활용 및 교구활용 교육"	2022.6.14.(화)	12명
20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6.15.(수)	7명
21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6.15.(수)	6명
22	서울테이케어센터	"인지상정1,2활용교육"	2022.6.16.(목)	9명
23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인지상정2활용교육"	2022.6.16.(목)	11명

소속 직업치료사 진행 '인지상정 학습지 활용교육'

연번	기관명	주요 내용	교육일자	인원
24	동북어르신돌봄중사자지원센터 (미아쉼터)	"인지상정1,2활용및교구활용교육"	2022.6.21.(화)	14명
25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인지상정1,2활용교육"	2022.6.22.(수)	3명
26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인지상정1,2활용교육"	2022.6.22.(수)	3명
27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6.22.(수)	8명
28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6.22.(수)	8명
29	강서구재가기관	장기요양사업실무교육	2022.6.22.(수)	51명
30	서울데이케어센터	"인지상정1,2활용교육"	2022.6.23.(목)	8명
31	서남어르신돌봄중사자지원센터	"인지상정2활용교육"	2022.6.23.(목)	12명
32	동북어르신돌봄중사자지원센터 (미아쉼터)	"인지상정1,2활용및교구활용교육"	2022.6.28.(화)	12명
33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6.29.(수)	10명
34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뇌미인프로그램"	2022.6.29.(수)	5명
35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교육"	2022.7.6.(수)	7명
36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교육"	2022.7.6.(수)	7명
37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교육"	2022.7.13.(수)	5명
38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교육"	2022.7.13.(수)	3명
39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인지상정2활용교육"	2022.7.14.(목)	26명
40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인지상정1,2활용교육"	2022.7.19.(화)	6명
41	동북어르신돌봄중사자지원센터 (미아쉼터)	"인지상정1활용교육"	2022.7.19.(화)	47명
42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교육"	2022.7.20.(수)	6명
43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인지상정1활용교육"	2022.7.20.(수)	6명
44	동북어르신돌봄중사자지원센터 (미아쉼터)	"인지상정1활용교육"	2022.7.26.(화)	48명
합 계				553명

☐ 자체개발 온라인 실습교육 콘텐츠 제공 실적

돌봄인력 대상 온라인 실습교육 콘텐츠 제공				
연번	기관명	주요 내용	교육일자	인원
1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돌봄인력실습콘텐츠 학습 (요양보호사)	2022.6.20.(월)	53명
2	보살핌	돌봄인력실습콘텐츠 학습 (요양보호사)	2022.6.20.(월)	-
3	충남사회서비스원	돌봄인력실습콘텐츠 학습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	2022.8.3.(수)	-
4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돌봄인력실습콘텐츠 학습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	2022.8.4.(목)	-